

2021학년도 3학기 수강신청 안내

1. 수강신청 요령

- 가. 수강신청은 매학기 개강전 대학에서 정한 기간동안 광주여자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(<https://sugang.kwu.ac.kr/>) 을 통해 개설강좌를 조회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를 입력하여야 한다.
- 나. 1, 2학년의 경우 교양필수는 선 수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학점에 대해서만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.
- 다. 수강신청 전 졸업학점구성표를 확인하여 전공이수학점 및 교양이수학점을 확인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라. 수강신청 전 교양필수 자가진단에서 교양필수(선택필수) 이수조건을 확인하여(충족, 미충족여부)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.
 - 경로 :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→ 성적 → 교양필수자가진단 → 충족,미충족 확인 → 미충족 대상 교과목 수강신청
- 마. 다전공 이수(복수,부,융합,연계,자기설계 전공)을 위해 타학과 전공을 수강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강좌 조회하여 교과목을 확인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.
 (융합/연계전공 신청학생은 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의 융합/연계전공 개설교과목을 확인하여 수강신청)

2. 최저수강신청학점

- 가. 매학기 최저수강신청학점은 **12학점**을 원칙으로 하나, 졸업학기 해당하는 학생 및 정규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최저수강신청 학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3. 최고수강신청학점

- 가. 일반

계열	졸업학점	1,3학기	2,4학기
인문사회계열	120학점	15~16학점	각 5학점
예체능계열		(1년 31학점 제한)	
사범(유아),보건계열	130학점	17학점	
사범(초등,중등)	135학점	17학점	

- 나. 성적우수자 : 전학기 성적우수자(성적평균평점 4.20이상)의 경우 추가이수학점(의무학기)
 -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: 3학점 추가 신청 가능(최대21학점)
 -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: 2학점 추가 신청 가능
- 다. 다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, 융합전공, 자기설계전공) 신청자
 - 4학년중에 학기당 3학점씩 총 6학점까지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.
- 라. 승인 없이 취득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4. 학사경고자 수강제한

- 가. 학사경고를 2회이상 받은 학생이 프로그램 미참여 시 다음학기 수강신청기준 학점에서 3학점 제한

5. 사이버 강의 교과목 신청 제한

- 가. 최대 2과목 신청가능
- 나. 2~4학년만 신청가능
- 다. 교양 사이버강좌 제한인원 : **99명 이내**

6. 교양필수 선 수강신청 예정(대학 본부 일괄 수강신청)

- 2021학번(1학년) : 마음발견(전체학과), 글쓰기기초(해당학과), 영어회화(해당학과), 비판적사고(해당학과), 논리와 IOT코딩(해당학과), 마음과 품성(사이버강의,해당학과), 대학생할 속 나의 미래설계(해당학과)
- 2020학번(2학년) : 마음공감(전체학과), AI와 빅데이터(해당학과)

7. 재수강

- 가. 재수강 신청 교과목은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동일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. 단,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예정자는 1학년 재수강은 불가함.
- 나. 재수강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면, 이전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 신청이 됨과 동시에 삭제가 된다.
- 다. 재수강 범위

내용	2014년 이전 입학자	2015년 이후 입학자	2018년 이후 입학자	2020년 이후 입학자
재수강 가능 교과목	제한없음	C+이하(79점) 교과목	동일	동일
재수강 신청학점 수 제한	제한없음	학기당 6학점 이내	동일	학기당 3학점 이내
재수강신청 교과목 취득성적 상한성적	제한없음	A-이하(91점) 성적 취득	동일	동일
재수강신청 횟수	제한없음	제한없음	전공 및 교양필수로	전공 및 교양필수로 지정된

			지정된 교과목을 제외한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 신청3회 제한	교과목을 제외한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신청 3회 제한하되 , 재학 중 최대 8회
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다. 성적처리 : 학생이 재수강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의 취득학점에서 삭제되며 취득 학점과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됨.

8. 교수-자녀간 성적 공정성을 위하여 부모 강의는 가급적 수강하지 않는다.

가. 사전신고제 도입 : 자녀가 부모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 담당교수는 학사운영팀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 신고

9. 수강신청 유의사항

가. 수강신청 후 수강한 과목을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에서 꼭!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수강권을 금전 거래 후 양도한 학생은 학칙 제73조(징계)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0조(절차)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다. 매크로와 같은 비정상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수강신청 내역은 관련 근거에 따라 강제 취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수강신청 결과 조회 :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=> 수강 => 수강신청 결과조회